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6. 29 선고 2020가단381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규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6. 2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3.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9.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6. 29.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6. 23. 접수 제40736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6. 8. 1. 접수 제9637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6. 6. 30. 접수 제953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11. 22. B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나. B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11.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들을 고용한 후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540,865,990원을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1. B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그 결과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6. 3. 18. B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하였다. B은 2016. 9.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1. 1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주문 제1항 기재 각 일자에 매수하고,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모두 피고이고, 피고는 B의 배우자인 점, B은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는 2016. 6. 23.부터 2016. 7. 29.까지의 37일 사이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 6월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진주시 C 대 92㎡ 및 그 지상 건물이 있었고, 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249,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

다. 피고는, B이 매매대금으로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의 증언만으로는 B이 매매대금을 정당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바 이를 상당한 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7. 3. 1.부터 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피고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그 소득을 저축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목록

1. 진주시 D 전 1458㎡
2. 경남 함양군 E 전 307㎡
3. 경남 산청군 F 답 450㎡
4. 경남 산청군 G 답 31㎡
5. 경남 산청군 H 답 23㎡
6. 경남 산청군 I 답 12㎡. 끝.